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76호 2026. 4. 15.(수)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955호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4
제1956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8
제1957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1958호 공주시 청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2
제1959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1960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1961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1962호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1963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1964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1965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1966호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3
제1967호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1968호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48
제1969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51
제1970호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59
제1971호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63
제1972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1973호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72

【예 규】

제255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지침 77

【공 고】

제2026-1127호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공주시사랑상품권 환전 중단 유예기간 안내 공고문 105
제2026-1180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6
제2026-1181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111
제2026-1204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3

【고 시】

제2026-60호 도시관리계획(중로3-유구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19
제2026-68호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129
제2026-70호 - 의당면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130
제2026-71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32
제2026-77호 공주 마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고시	136
제2026-78호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139
제2026-79호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1
제2026-8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54
제2026-83호 공주시 수도정비계획(변경) 고시	155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55호

공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
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세대별로 A급 화재용 분말식 소형소화기(약제충전량 3.3킬로그램 이상) 1개를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수량은 세대당 2개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56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에게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일상으로 복
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현상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공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아.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인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등 지원 대상) 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보험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 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액이 200만원 미만인 주택 화재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이 화재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피해지원금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

2. 임시거처지원금: 실거주자인 피해 주민

3.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주택 복구 이행 주체로 인정되는 자.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주택 복구 이행 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실거주자인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등 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액 1,000만원 미만: 100만원

2. 피해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50만원

3. 피해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

4. 피해액 5,000만원 이상: 2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액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발급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시거처지원금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원 기간의 경우 주택 임차 개시일 또는 숙박시설 최초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의 100%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등 수령) 피해지원금등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각각 수령한다.

제9조(지원 금액 환수)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연 락 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전취약계층	[] 해당, [] 미해당	구 분	

2. 피해 내용

※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3. 확인 사항

※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명	보장내용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확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여부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공주소방서 발급) 1부.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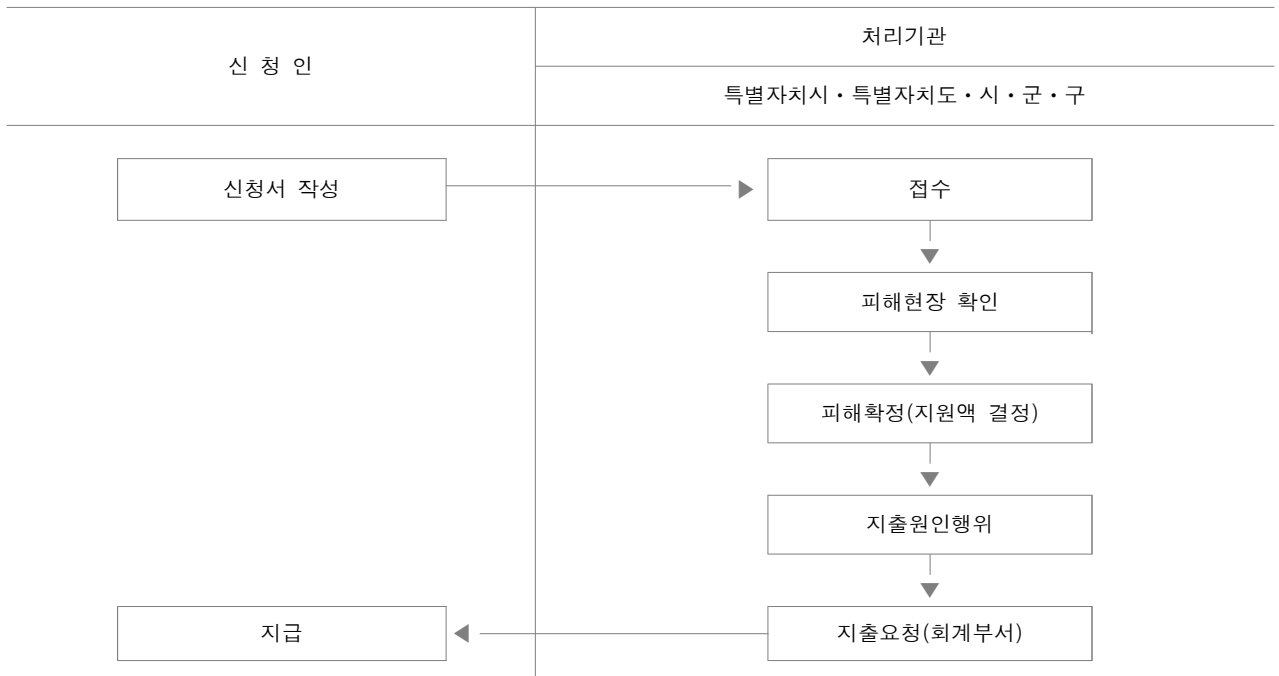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면·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임시거처지원금 지원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거형태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연락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전취약계층	[] 해당, [] 미해당	구분	

2. 피해 내용

※ 피해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3. 임시거처 확인사항

주거방법	[] 주택 임차, [] 숙박시설 이용
임차비용	

4. 확인 사항

※ 피해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명		보장내용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임시거처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확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공주소방서 발급) 1부. (※ 기재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② 임시거처 비용 증빙(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숙박시설 이용료 영수증) 1부.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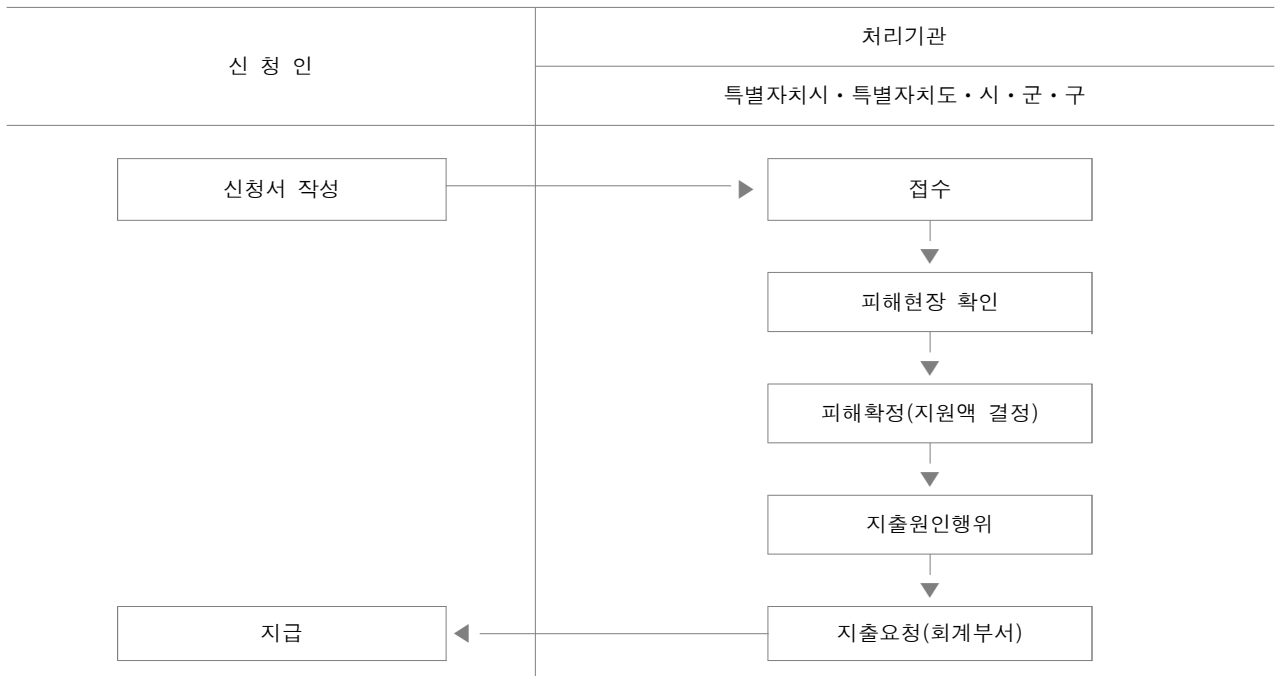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면·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지원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거형태	[] 소유자(실거주), [] 세입자		
연락처	유선전화		이동전화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전취약계층	[] 해당, [] 미해당	구분	

2. 피해 내용

※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

처리일시		처리비용	
처리업체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4. 확인 사항

※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재난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명	보장내용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란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자격 확인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 확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여부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공주소방서 발급) 1부. (※ 기재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 및 증빙사진(처리업체 발급) 1부.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위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의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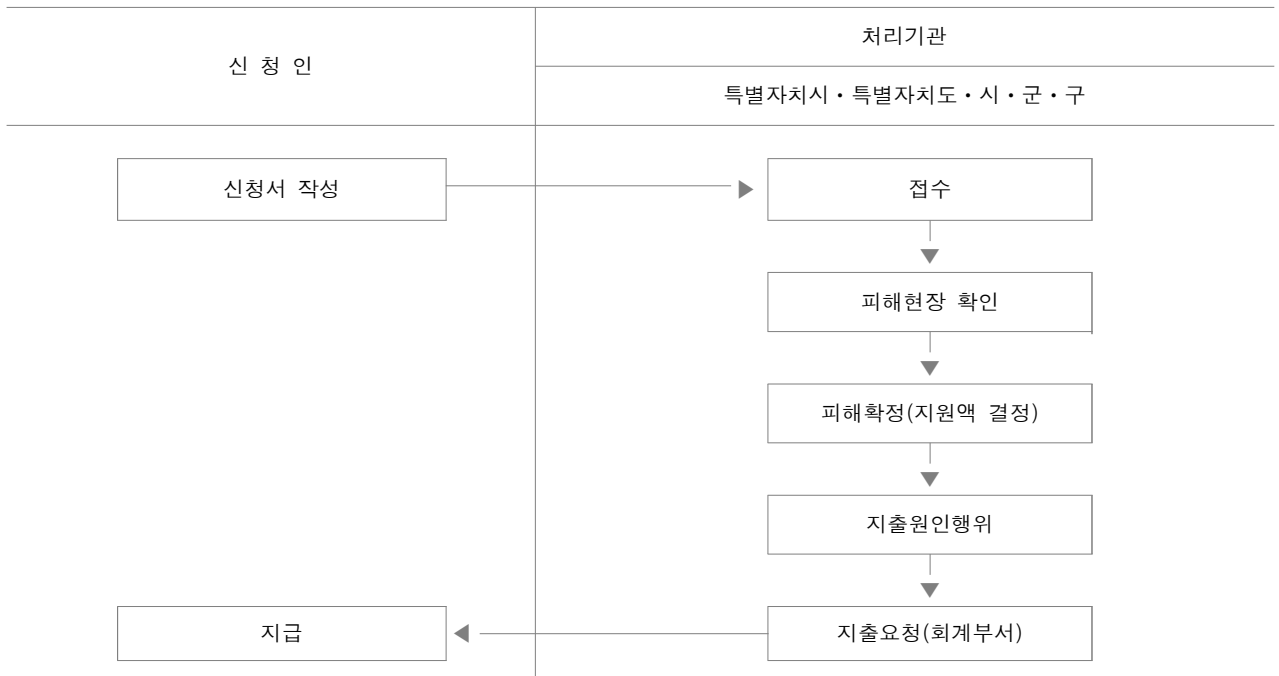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이 건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 및 읍·면·동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57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항제3호 중 “**편의시설**”을 “**편의시설, 옥상비가림시설(단, 외벽이 없이 높이 1.8미터 이내로 일조권에 영향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58호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공주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문화”란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치관·의식·행동양식 및 제도적 기반이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렴주간 운영)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주관을 지정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청렴주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렴도 평가·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활용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청렴시책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 또는 선정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59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과목의 광고물등란 중 “**과. 현수막**”을 “**과. 현수막(현수기 포함)**”
으로 하고, 같은 목 수수료란 중 “**5,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란 중 “2) 현수막”을 “2) 현수막(현수기 포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0호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2.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시내버스 요금청구서”를 “대중교통 요금청구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운영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1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직주차선: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수직주차선 설치기준(제10조제4항과 관련)

1. 수직주차선 설치 조건 :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으로 한정

2.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수직주차선 높이	0.7미터 이하	기존 주차구획선 색상 과 동일하게 도색
수직주차선 너비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 또는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2호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사람 중
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3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①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대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대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부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대부받는 자의 기준
3. 대부받는 자의 거주 의무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4. 대부의 방법 및 절차
5. 대부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유지 우선 대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대부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100분의 50
2. 공유재산의 대부료: 100분의 50

⑧ 제7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 심사, 결정, 변경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중 “5이상”을 “5 이상 증가하여”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감액한다”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수도권 이주자 등에 대한 공유지 우선 매각) ①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유지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등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 이후 수도권에서 공주시(인구감소지역)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공주시로 이전한 사람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4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를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로, “가정생활 영위를”을 “가정생활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공주시(이하“시””를 “공주시(이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민법」 제779조”를 “이란 「민법」 제779조”로 한다.

제3조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정적”을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센터(이하“센터””를 “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시장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5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
항제14호”를 “제1항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16.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및 비
상벨 등 설치 및 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6호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도로터널·터널진입도로·보도(步道)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재
난 및 결빙 등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步道)”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2.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제2종시설물 및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4. “도로터널 등”이란 제2호의 시설물 및 제3호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터널에는 환기시설·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지하차도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 등) ① 시장은 도로터널, 보도(歩道)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노면의 결빙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

는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제설자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관리체계) 시장은 해당 도로터널 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수습과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사업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반영)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중 보도(步道)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규정은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후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7호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8호

공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매각·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하여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69호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
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
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70호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
을 도입·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
를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 구현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
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
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
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
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71호

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공주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72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

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산검사위원”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을 “위원 개인 또는”으로, “사전승낙”을 “사전 승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주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품위가 손상된 경우
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검사”로, “처리”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제목 “(결산 검사 사항)”을 “(검사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를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로, “이를 같음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검사협조)”를 “(검사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고”를 “시 금고”로, “결산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 중 “결산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일비”로, “의한 위촉기간”을 “따른 위촉기간”으로, “실제로 감사개시일”을 “실제 검사 개

시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위원이 아닌”을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으로, “설명하게 되는 때는”을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로 한다.

제12조 중 “결산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축 장

직위

성명

0000회계연도 공주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0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직인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1973호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공주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
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예방접종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2.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비 청구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송무경

2026년 4월 15일

공주시 예규 제255호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개정지침

공주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공주시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 강의등을 신고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일시		
위 내용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p>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합니다.</p>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고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일괄신고</div> <div>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div> </div>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고기록 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통보 <input type="checkbox"/> 법원 통보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 통보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input type="checkbox"/> 종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리내역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 료 확 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보존기간	년 (20 . .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
	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에서 조사·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동의 [] 부동의
타 기관 신고 여부	[] 타 기관 신고([] 소속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공주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비고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297mm×210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 환전 중단 유예기간 안내 공고문

2016년 발행이 중단된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지역 내 유통도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중단하기 전 유예기간(1년)을 둘 예정으로 이 사실을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

공 주 시 장

1. **공고사항 :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 환전 중단 유예기간(1년) 안내**
2. **환전 중단 유예기간 : 2026.04.08.(수) ~ 2027.04.07.(수)**
 - 2027.04.08.(목)부터는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습니다.
3. **유의사항**
 - 현재 공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소지하고 계신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은 유예기간 내에 신속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지류형 공주사랑상품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공고방법 : 공주시청 누리집(<http://www.gongju.go.kr>), 공주시보 게재**
 - 공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공주시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의료업무 수당 라목에 대하여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별표5 지급액을 월 500,000원에서 월 600,000원으로 상향하여 수의직 종사 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명칭 변경(제2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수의직렬 공무원 지급액 상향(별표5)
 - 월 500,000원 → 월 600,000원

3. 입법예고기간 : 2026. 4. 15. ~ 2026. 5.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44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kkjjgg5158@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840-2244)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kkjgg5158@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가축 · 동물 · 축산물의 방역 · 검역 ·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지급액란 중 “**500,000원**”을 “**600,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및 신조 사유 : 중학동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교체
2. 공인 폐기일 및 신조 공인 최초 사용일 : 2026. 4. 15.
3. 폐기 공인 내역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중학동	공주시중학동장인 민원실전용	니트릴고무 2.1×2.1 훈민정음체		

4. 신조 공인 내역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중학동	공주시중학동장인 제증명발급전용	우레탄(특수고무) 2.1×2.1 훈민정음체		

공주시 공고 제2026-1204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종료시점 명시 및 반납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설정 조문 정비(안 제5조)
 -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
- 불필요 조문삭제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반납조항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5. ~ 5. 6.(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전화: (041) 840 - 3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3(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 32542

- 전화 : (041) 840-3257 팩스 : (041) 840-3742, 전자우편 : seeee93@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공주시 임신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41-840-3257)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120) (우편번호 32542)

ㄴ FAX : 041-840-3742, 전자우편 : seeee93@korea.kr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지**”를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로, “**등록 관리한다**”를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중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로, “**180일까지**”를 “**180일까지의**”로, “**발급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p> <p>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u>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u></p>	<p>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p> <p>① -----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경우 <u>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 등록·관리하여야 한다.</u></p>
<p>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u>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 수 있다.</u></p>	<p>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서 <u>자동차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u></p>
<p>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시장은 <u>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u></p>	<p>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 180일까지의 ----- 발급하여야 한다.</p>
<p>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p>	<p><삭 제></p>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자
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중로3-유구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6-5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유구1호)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 및 도로과(☎041-840-7833)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8.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6-5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유구1호)사업
- 명 칭 : 유구읍 녹천리(신설동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다. 사업의 목적

- 유구읍 녹천교~수춘교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3-유구1호) 실시 설계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함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 폭원 12.0~19.0m, 연장 400.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2 참조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3 참조

카. 위치도 및 공사계획도면 : 붙임4 참조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35,184	5,475	-	-	-	-	-	-	
1	녹천리 26-21	대	171	18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강○득	1/1				
2	녹천리 26-41	대	71	71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김○대	1/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유○합	근저당권	
3	녹천리 26-42	대	4	4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오○석	1/1				
4	녹천리 26-43	대	77	77	공주시	공	1/1				
5	녹천리 26-44	대	31	31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나○순	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주○행	근저당권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김○수	채무자	
6	녹천리 26-45	대	3	3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오○석	1/1				
7	녹천리 26-47	대	65	65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김○대	1/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유○합	근저당권	
8	녹천리 26-48	대	2	2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김○대	1/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유○합	근저당권	
9	녹천리 26-49	대	605	605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강○득	1/1				
10	녹천리 26-50	대	1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김○윤	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중○행	근저당권	
11	녹천리 27-5	제	157	1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최○철	1/1				
12	녹천리 30-6	답	1	1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김○란	1/1				
13	녹천리 30-7	구	23	23	공주시	공	1/1				
14	녹천리 30-8	구	15	15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임○장	1/1				
15	녹천리 680-13	천	22,124	72	국토교통부	국	1/1				
16	녹천리 680-64	천	1,272	1,240	국토교통부	국	1/1				
17	녹천리 722-1	도	36	19	국토교통부	국	1/1				
18	녹천리 722-2	도	1,301	1,301	국토교통부	국	1/1				
19	석남리 183-2	천	231	171	충청남도	공	1/1				
20	석남리 184-1	대	11	11	공주시 중동	김○석	1/1				
21	석남리 184-2	대	64	64	공주시 중동	김○석	1/1				
22	석남리 205-3	도	27	1	공주시	공	1/1				
23	석남리 205-4	전	216	216	공주시	공	1/1				
24	석남리 206-1	대	155	155	충청남도	공	1/1				
25	석남리 429-9	천	171	69	국토교통부	국	1/1				
26	석남리 439	도	6,958	1	국토교통부	국	1/1				
27	석남리 439-10	도	327	30	국토교통부	국	1/1				
28	석남리 439-11	도	20	7	국토교통부	국	1/1				
29	석남리 439-14	도	1,045	1,045	국토교통부	국	1/1				

■ 사용 또는 수용할 건축물 등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녹천리 26-41 외 2필지	대	가옥	슬라브조적	384.3㎡	공주시 유구읍	김○대	-	-	-	
			가옥	슬라브조적	186.5㎡						
			가옥	슬라브조적	203.3㎡						
			가옥	슬라브조적	42.2㎡						
			컨테이너	-	18.6㎡						
			대문	H=3.0m, B=2.0m, 철제	1EA						
			담장	H=1.9m	22.4m						
		담장	H=1.3m	30.6m							
2	녹천리 26-44	대	가옥	슬라브조적	325.6㎡	공주시 유구읍	나○순	-	-	-	
3	녹천리 26-45	대	가옥	슬라브조적	271.6㎡	공주시 유구읍	오○석	-	-	-	
4	녹천리 27-5	제	가옥	연와조적	21.3㎡	서울특별시 봉천동	최○철	-	-	-	
			담장	H=1.3m	14m						
			대문	B=1.0m	1EA						
5	녹천리 26-43	대	가옥	슬라브조적	48㎡	공주시 봉황동	공○시	-	-	-	
			천막	-	133㎡						
			은행나무	φ50cm, H=12m	1주						
			담장	H=1.9m	34m						
			대문	B=2.2m	1EA						
6	녹천리 722-2 외 1번지	도	가옥	슬라브조적	150.5㎡	공주시 유구읍	한○환	-	-	-	
			가옥	슬라브조적	86.4㎡						
			창고	연와조적	70㎡						
			담장	H=1.5m	5.6m						
			담장	H=1.5m	16m						
			대문	H=1.9m	1EA						
			대문	φ10cm, H=5m	1EA						
화장실	화장실	3㎡									
7	석남리 439-14	도	가옥	RC조	160㎡	서울특별시 대치동	김○강	-	-	-	
			담장	H=1.8m	9.6m						
			담장	H=1.1m	14m						
			메쉬웬스	H=1.2m	5.2m						
8	석남리 439-14	도	조명등	-	1ea	공주시 유구읍	유○회	-	-	-	
			교목	φ10cm, H=5m	1주						
			편백나무	φ5m, H=5m	4주						
			관목	φ5cm, H=1m	1주						
			소나무	φ5cm, H=1m	1주						
			단풍나무	φ20cm, H=6m	1주						
9	석남리 439-14	도	가옥	연와조적	13.6㎡	공주시 유구읍	강○경	-	-	-	
			담장	H=1.1m	7.4m						
			철제난간	H=1.0m	20.4m						
			대문	B=3.3m	1ea						
10	녹천리 680-13	천	물탱크	-	1ea	공주시 유구읍	유○읍	-	-	-	
			벤치	-	1ea						
11	석남리 205-2	전	간판	-	1ea	공주시 유구읍	이○원	-	-	-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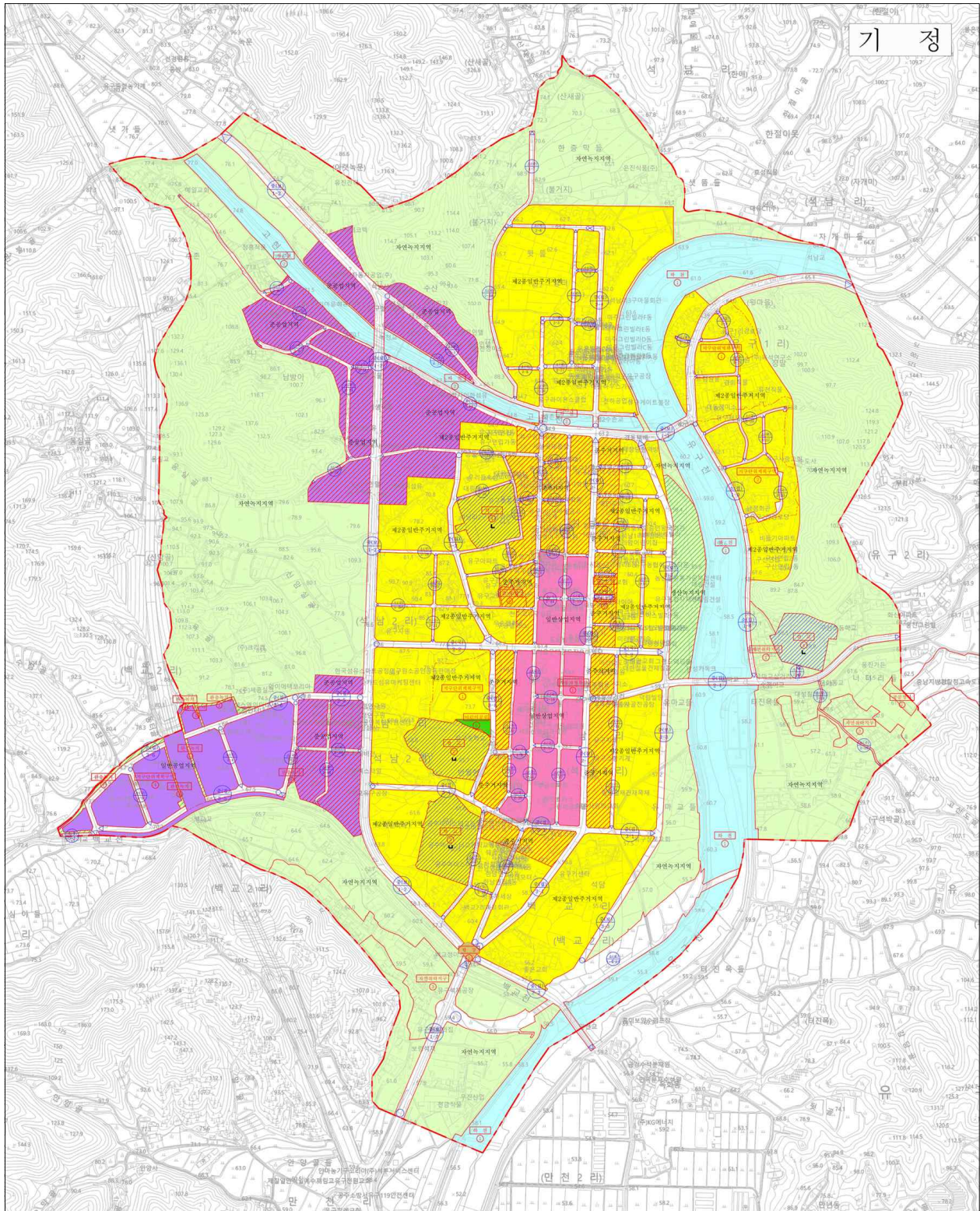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유구1	12 ~19	국지 도로	394	중로 1-2	중로 1-1	일반 도로		'77.12.31.	경미한 변경
변경	중로	3	유구1	12 ~19	국지 도로	394	중로 1-2	중로 1-1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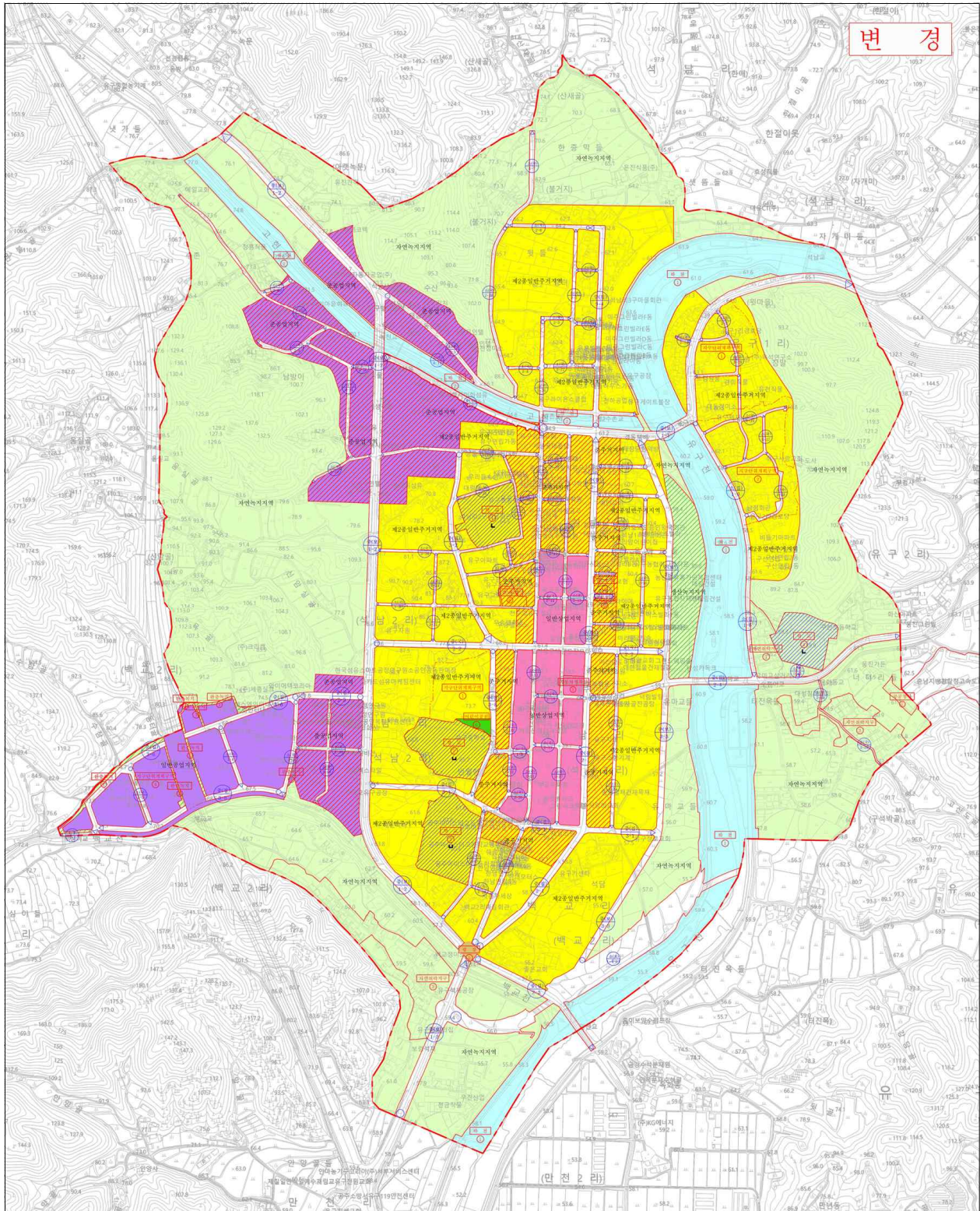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중로 3-유구1	중로 3-유구1	◦ 면적 정정 및 변경 - 정정 : 5,756㎡ → 5,466㎡ [감) 290㎡] - 변경 : 5,466㎡ → 5,475㎡ [증) 9㎡]	◦ 면적산정 착오 정정 및 토지분할 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붙임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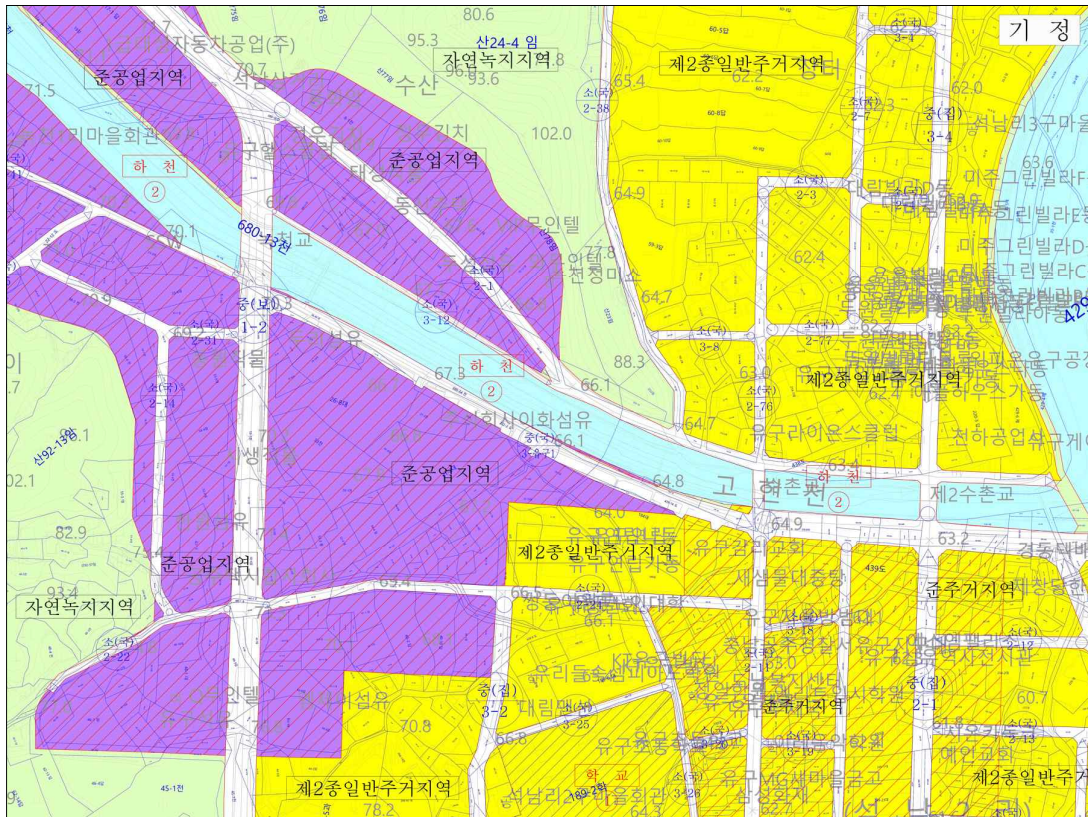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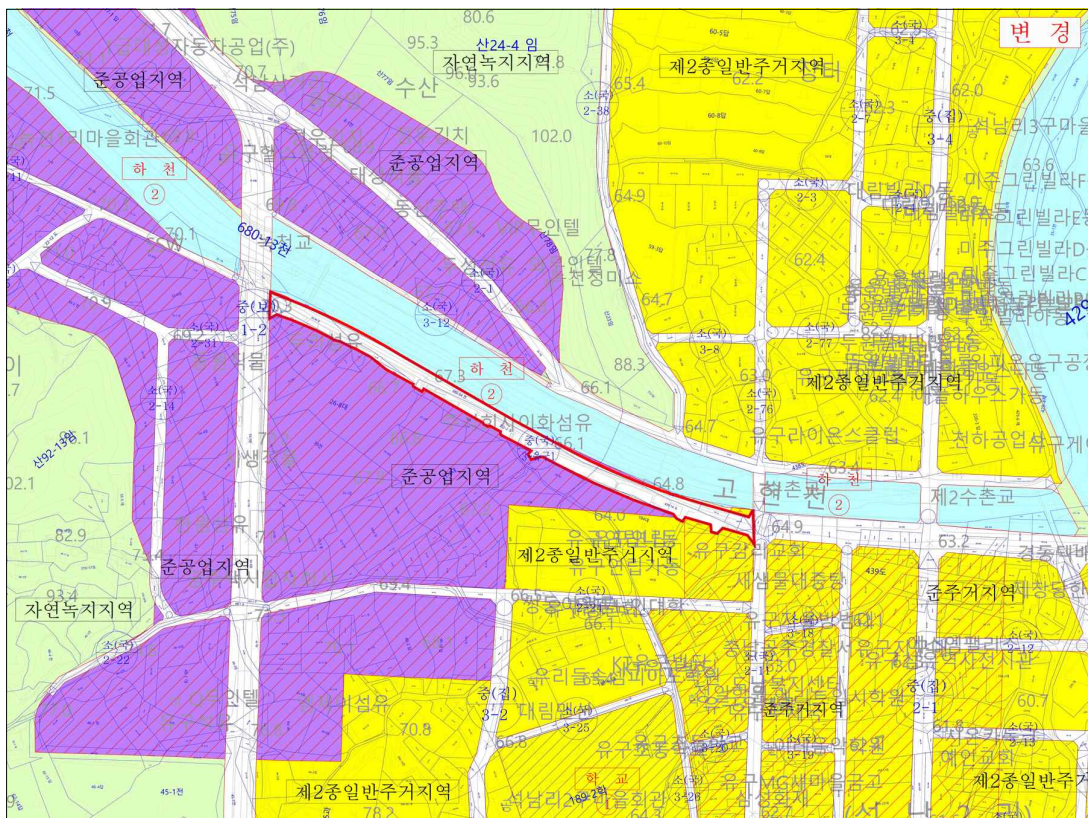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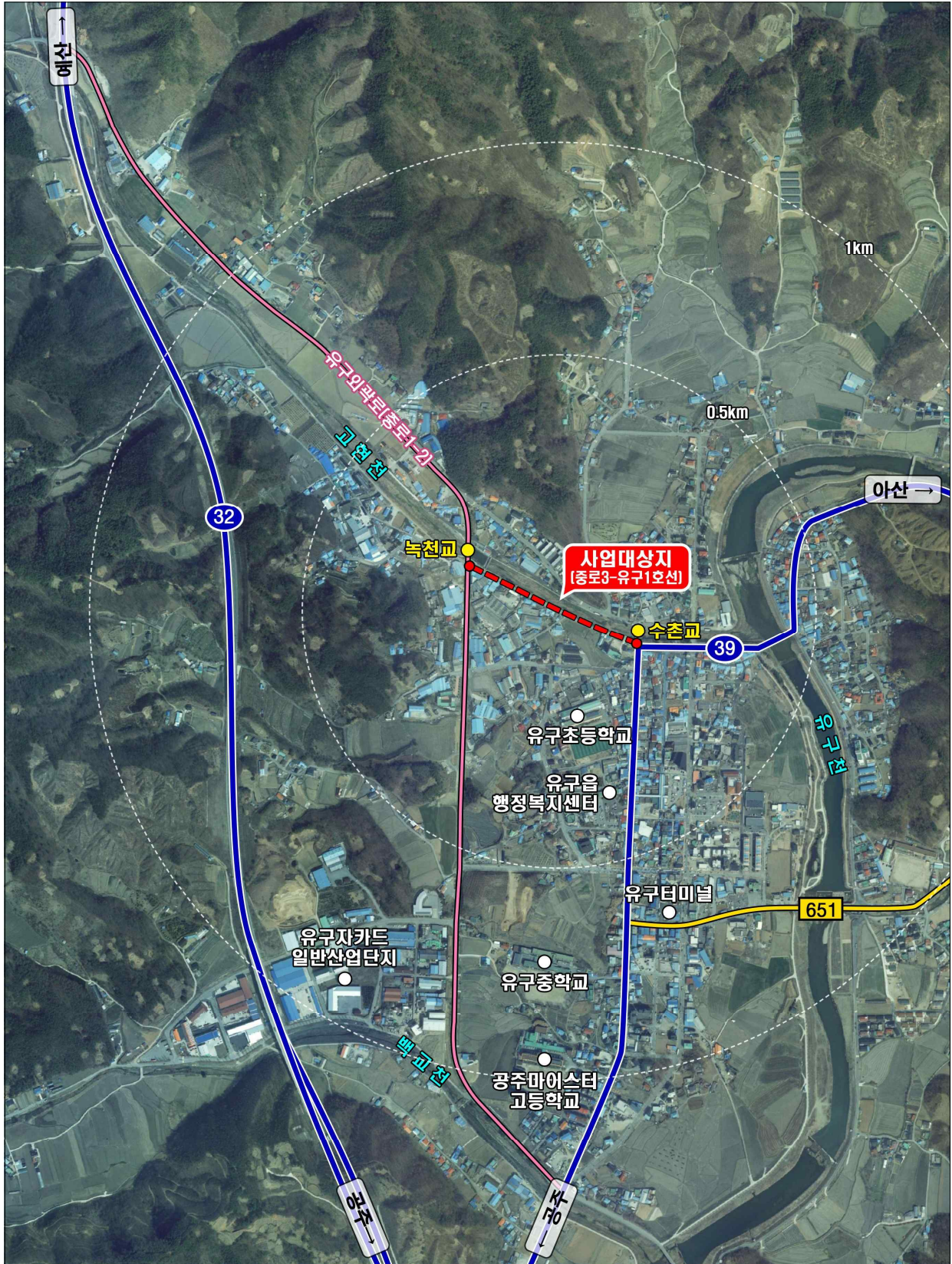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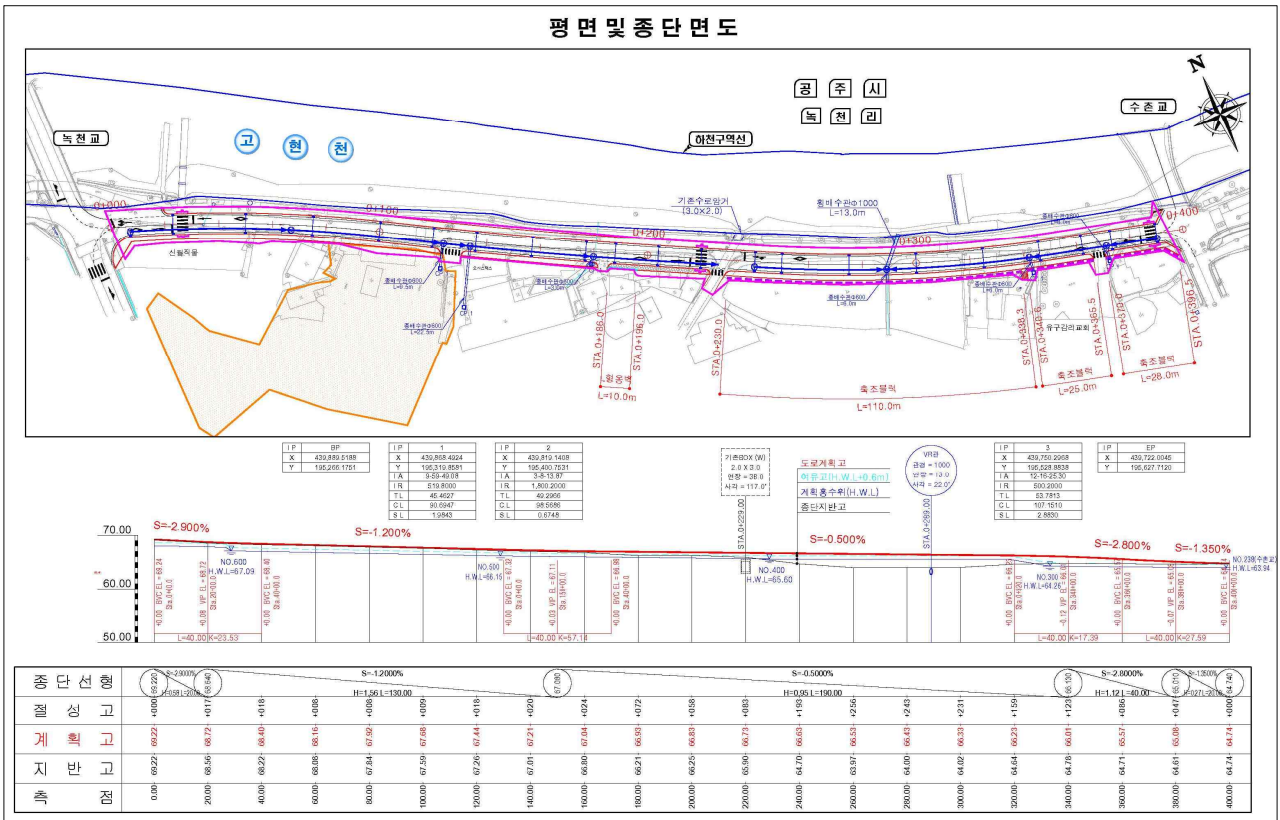


붙임4. 위치도 및 공사계획도면

□ 위치도



□ 공사계획도면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공주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2. 고시면적 : 61,051,855㎡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계	61,054,551.1	61,051,855.0	100.0	감) 2,696.1㎡	
도시지역	주거지역	6,113,024.0	6,779,448.0	11.1	○ 증감사유 :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6-77호, '26. 2.10.)관련 용도지역(비도시) 환원면적, 용도지역 세분 반영
	상업지역	526,839.0	569,587.0	0.9	
	공업지역	3,329,409.3	3,329,409.3	5.5	
	녹지지역	50,145,684.8	50,373,410.7	82.5	
	미지정	939,594.0	-	-	

3.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도시지역에 대한 상세내용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고시내용에 대한 문의 :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9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당면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의당면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일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의당면 오인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일원
 -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노(老)지원 신축, 외부경관 조성
 - 마을자율S/W프로그램 : 마을보호사 양성, 사회적협동조합 양성과정, 출향인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 지역역량강화 :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마을발전컨설팅, 부대비용 등
 4. 사업비 소요액 : 700백만원 (도비 150, 시비 550)
 5.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6. 변경사항 : 낙찰차액에 반영 및 실집행액 반영 등
 7. 사업효과 : 고령인구 복지수요 확충, 농촌복지모델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8.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위탁 시행)
- ※ 기타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지역활력과(☎ 041-840-2364)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041-850-64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승 인 액(A)		변 경 액(B)		증감(B-A)	절대값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액	
총 사업비			700,000		700,000	-	-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429,150		495,910	66,760	66,760
	노치원 신축	1식	419,200	1식	468,210	49,010	
	외부경관 조성	1식	9,950	1식	27,700	17,750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소 계		75,908		75,909	1	1
	마을보호사 양성	4회	6,712	2회	6,712	-	
	사회적협동조합 양성과정	4회	9,482	2회	9,483	1	
	출향인과의함께하는 마을만들기	12회	59,714	12회	59,714	-	
지역역량강화	소 계		12,629		12,629	-	-
	마을발전컨설팅	2회	12,629	2회	12,629	-	
부대비용	소 계		182,313		115,552	▽66,761	66,761
	기본계획비	1식	31,260	1식	30,143	▽1,117	
	세부설계비	1식	15,474	1식	11,347	▽4,127	
	공사감리비	1식	38,827	1식	43,968	5,141	
	사업관리비	1식	8,001	1식	9,610	1,609	
	잡지출	1식	19,930	1식	20,484	554	
	예비비	1식	68,821	1식	-	▽68,821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 및 투자유치실(☎041-840-21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13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5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명칭 :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목적 : 보물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의 증가로 폐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여 변경을 하고자 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사업면적 A=1763.1㎡(전체) 244.66㎡(금회 변경)
- 규모 : 건축면적 : 465.38㎡ (증 244.66㎡)
연 면 적 : 710.04㎡ (증 489.32㎡)
- 내용 : 공주시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공주시(투자유치실)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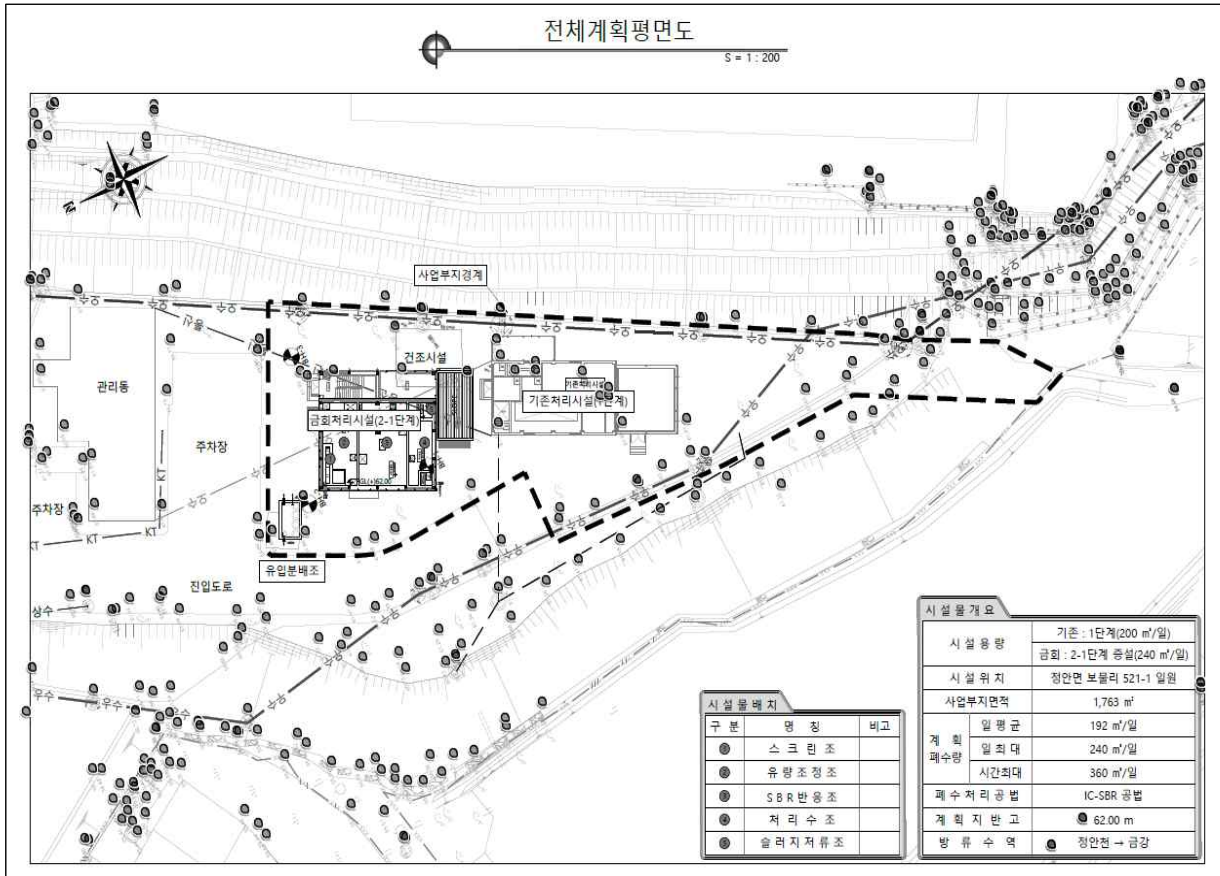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2. 공사계획도면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763.1		
1	정안면 보물리	521-2	대	1,034.0	공주시	
2	정안면 보물리	521-1	대	729.1	공주시	

붙임2. 계획평면도



도시계획시설선 위성사진 (환경오염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공주 마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고시

1.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일원의 마곡온천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관광과(041-840-839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6. 4. 8.

공 주 시 장

- 가. 관광지명 : 공주 마곡온천 관광지
- 나.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일원
- 다. 지정면적 : 621,592m²(변경 없음)
- 라. 시 행 자 : 공주시장(마곡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 마. 사업기간 : 1999 ~ 2028년
- 바.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사. 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변경 없음
- 자. 기타사항 : 총회의결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조합원 공람),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이행 후 공사 착수 가능

■ 관광시설계획 조서 (변경)

1. 관광시설조서 (변경)

가. 관광지 면적

(단위 : m²)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관광지 면적	621,592	621,592	-	
시 설 면 적	382,907	423,047	40,140	
시 설 율(%)	61.7	68.1	6.4	시설면적/관광지면적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621,592	621,592	-	100.0	100.0	-	
공공 편익 시설 지구	91,631	92,292	661	14.8	14.9	0.1	
숙박시설지구	155,415	174,257	18,842	25.0	28.0	3.0	
상가시설지구	52,416	67,856	15,440	8.5	10.9	2.4	
운동·오락시설 지구	44,962	50,159	5,197	7.2	8.1	0.9	
휴양·문화시설 지구	38,483	38,483	-	6.2	6.2	-	
기타시설지구	238,685	198,545	△40,140	38.3	31.9	△6.4	

2. 시설배치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단위 : m²)

구 분	부지면적			시설수(동)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621,592	621,592	-	120	130	10	171,170	184,347	13,177	
공공편의 시설지구	91,631	92,292	661	7	7	-	500	500		
관리사무소	1,976	1,976	-	1	1	-	100	100		
배수지	1,000	1,000	-	1	1	-	50	50		관리소
도로	58,017	58,017	-	-	-	-	-	-		
주차장	28,510	29,171	661	4	4	-	150	150		주차관리소(1동) 공중화장실(3동)
하수처리장및소각장	2,128	2,128	-	1	1	-	200	200		관리소
숙박시설지구	155,415	174,257	18,842	81	89	8	122,040	128,237	6,197	
관광호텔	27,225	27,225	-	2	2	-	34,400	34,400		
콘도미니엄	15,204	15,204	-	1	1	-	8,190	8,190		
별장	29,719	29,719	-	29	29	-	3,600	3,600		
여관	63,295	66,518	3,223	40	42	2	73,150	76,875	3,725	2개동 추가
산장	19,972	19,972	-	9	9	-	2,700	2,700		
펫빌리지	-	15,619	15,619	-	6	6	-	2,472	2,472	6개동 신설
상가시설지구	52,416	67,856	15,440	22	23	1	35,740	41,322	5,582	
상가	18,607	34,047	15,440	20	21	1	21,120	26,702	5,582	1개동 추가
온천장	13,896	13,896	-	1	1	-	6,800	6,800		
시범온천장	19,913	19,913	-	1	1	-	7,820	7,820		
운동·오락 시설지구	44,962	50,159	5,197	8	9	1	4,730	6,128	1,398	
유기시설	34,992	34,992	-	7	7	-	-	-		
수영장 및 온천탕	9,970	9,970	-	1	1	-	4,730	4,730		기존시설 (온천탕포함)
VR사이버관	-	5,197	5,197	-	1	1	-	1,398	1,398	1개동 신설
휴양·문화 시설지구	38,483	38,483	-	2	2	-	8,160	8,160		
노인복지시설	19,675	19,675	-	1	1	-	4,080	4,080		
보양원	11,698	11,698	-	1	1	-	4,080	4,080		
광장	7,110	7,110	-	-	-	-	-	-		
기타 시설지구	238,685	198,545	△40,140	-	-	-	-	-		
저류지	7,427	7,427	-	-	-	-	-	-		
녹지	231,258	191,118	△40,140	-	-	-	-	-		

공주시 고시 제2026-78호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계룡저수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1. 낚시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만수면적	수면관리자	용도
계룡저수지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일원	71.7ha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업용

2. 낚시금지구역 위치도



3. 금 지 행 위 : 계룡저수지 내 일체의 낚시행위

※ 예외사항 : 학술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위한 사전허가 시

4. 금 지 기 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5. 낚시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2) 처분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의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의 『산성문화공원 안심공간 조성사업』 및
기조성된 현황 반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 및 경제과(☎041-840-82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15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참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붙임 2 참조
3.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 3 참조
4.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4 참조

붙임 1.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5	산성문화공원	문화공원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3,680	-	3,680	10.04.01 (공주시 고시 제2010- 48호)	

2.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80.00	-	3,680.00	96.05	증)67.08	163.13	96.05	증)67.08	163.13	95	감)40	55	시설률 : 90.7% → 92.5%	
세 부 시 설	시설 소계	3,338.14	증)67.61	3,405.75	96.05	증)67.08	163.13	96.05	증)67.08	163.13	50	감)24	26	※ 시설률 (법적기준) : 재현없음
	기반시설	소계	2,516.89	증)45.71	2,562.60	-	-	-	-	-	25	감)9	16	※ 시설률 (지침기준) : 20.0% 이내
		광장	2,516.89	증)45.71	2,562.60	-	-	-	-	-	25	감)9	16	
	조경시설	393.42	-	393.42	-	-	-	-	-	-	1	-	1	
	휴양시설	221.28	감)88.77	132.51	-	-	-	-	-	-	21	감)19	2	건폐율 : 2.6% → 4.4%
	운동시설	-	증)34.13	34.13	-	-	-	-	-	-	-	증)6	6	
	교양시설	161.86	감)69.96	91.90	60.00	감)60.00	-	60.00	감)60.00	-	2	감)1	1	
편익시설	44.69	증)146.50	191.19	36.05	증)127.08	163.13	36.05	증)127.08	163.13	1	감)1	-		
녹지 및 기타	341.86	감)67.61	274.25	-	-	-	-	-	-	45	감)16	29		

나.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5	산성 문화공원	· 세부시설 변경 - 기반시설(광장) : 2,516.89㎡ → 2,562.60㎡[증) 45.71㎡] - 휴양시설 : 221.28㎡ → 132.51㎡[감) 88.77㎡] - 운동시설(신설) : 34.13㎡ - 교양시설 : 161.86㎡ → 91.90㎡[감) 69.96㎡] - 편익시설 : 44.69㎡ → 191.19㎡[증) 146.50㎡] - 녹지 및 기타 : 341.86㎡ → 274.25㎡[감) 67.61㎡]	· 기초성 현황 반영 및 관리사무소 증축·안전시설 설치 등 공원 이용환경 개선

다-1.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총괄) (기정)

시설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3,680.00	96.05	96.05	95	
시설부지 소계			3,338.14	96.05	96.05	50	90.7%
기반시설	소 계		2,516.89	-	-	25	
	가-1	광 장	2,516.89	-	-	25	
조경시설	소 계		393.42	-	-	1	
	나-1	수경시설	393.42	-	-	1	
휴양시설	소 계		221.28	-	-	21	
	다-1	쉼 터	221.28	-	-	21	
교양시설	소 계		161.86	60.00	60.00	2	
	라-1	문화홍보관	69.96	60.00	60.00	1	
	라-2	야외공연장	91.90	-	-	1	
편익시설	소 계		44.69	36.05	36.05	1	
	마-1	화장실	44.69	36.05	36.05	1	
녹지 및 기타부지			341.86	-	-	45	9.3%
녹지 및 기타	소 계		341.86	-	-	45	
	-	녹 지	341.86	-	-	45	

다-2.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총괄) (변경)

시설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3,680.00	163.13	163.13	55	
시설부지 소계			3,405.75	163.13	163.13	26	92.5%
기반시설	소 계		2,562.60	-	-	16	
	가-1	광 장	2,562.60	-	-	16	
조경시설	소 계		393.42	-	-	1	
	나-1	수경시설	393.42	-	-	1	
휴양시설	소 계		132.51	-	-	2	
	다-1	쉼터A	77.07	-	-	2	
	다-2	쉼터B	55.44	-	-	-	
운동시설	소 계		34.13	-	-	6	
	라-1	체력단련장	34.13	-	-	6	
교양시설	소 계		91.90	-	-	1	
	마-1	야외공연장	91.90	-	-	1	
편익시설	소 계		191.19	128.18	128.18	-	
	바-1	화장실	44.69	34.95	34.95	-	
	바-2	휴게음식점	127.15	110.47	110.47	-	
	바-3	관리사무소	19.35	17.71	17.71	-	
녹지 및 기타부지			274.25	-	-	29	7.5%
녹지 및 기타	소 계		274.25	-	-	29	
	-	녹 지	274.25	-	-	29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공원시설별)

1)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광장 총괄표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공작물(기)	비고
광 장	2,562.60	-	16	블라드 7개소, 보안등 8개소 비가림 차양막 1개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 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516.89	증)45.71	2,562.60	-	-
변경	가-1	광장	2,516.89	증)45.71	2,562.60	-	기정 : 블라드 16개소, 보안등A 3개소, 등 의자 6개소 변경 : 블라드 7개소, 보안등 8개소, 비가림 차양막 1개소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1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2,516.89m² → 2,562.60m²[증) 45.71m²] · 공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 블라드 16개소, 보안등A 3개소, 등의자 6개소 - 변경 : 블라드 7개소, 보안등 8개소 비가림 차양막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성 현황 및 관리사무소 증축 및 현 이용상황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시설치 현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안등 신설 및 현황 반영에 따른 시설내용 변경

2) 조경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조경시설 총괄표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수경시설	393.42	-	1	바닥분수 1식

■ 조경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3.42	-	393.42	-	-
기정	나-1	수경시설	393.42	-	393.42	-	바닥분수 1식

3) 휴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 휴양시설 총괄표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계	132.51	-	2	-
쉼터A	77.07	-	2	보안등 2개소
쉼터B	55.44	-	-	-

■ 휴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1.28	감)88.77	132.51	-	-
변경	다-1	쉼터A	221.28	감)144.21	77.07	-	기정 : 파고라 2개소, 등 의자 7개소, 평 의자 11개소, 보안등B 1개소 변경 : 보안등 2개소
신설	다-2	쉼터B	-	증)55.44	55.44	-	-

■ 휴양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다-1	쉼터A	· 면적 : 221.28㎡ → 77.07㎡[감] 144.21㎡ · 공작물 - 지정 : 파고라 2개소, 등 의자 7개소, 평의자 11개소, 보안등B 1개소 - 변경 : 보안등 2개소	· 기초성 현황에 따른 면적 변경 · 파고라 철거 등 현황 반영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안등 신설
다-2	쉼터B	· 신설 - 면적 : 55.44㎡	· 기초성 현황에 따른 신설

4) 운동시설 결정(변경) 조서 (신설)

■ 운동시설 총괄표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체력단련장	34.13	-	6	체력단련시설 5개소, 보안등 1개소

■ 운동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지정	변경	변경후		
계			-	증)34.13	34.13	-	-
신설	라-1	체력단련장	-	증)34.13	34.13	-	체력단련시설 5개소, 보안등 1개소

■ 운동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번호	세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라-1	체력 단련장	· 신설 - 면적 : 34.13㎡ - 공작물 : 체력단련시설 5개소, 보안등 1개소	· 기초성 현황에 따른 신설

5) 교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교양시설 총괄표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야외공연장	91.90	-	1	야외무대 1개소

■ 교양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61.86	감)69.96	91.90	60.00	-	-
폐지	라-1	-	문화홍보관	69.96	감)69.96	-	60.00	-	문화홍보관 1개소
변경	라-2	마-1	야외공연장	91.90	-	91.90	-	-	야외무대 1개소

■ 교양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라-1	-	문화홍보관	· 폐지	· 행정효율성, 비용절감, 시설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련절차를 거쳐 민간운영중인 현황을 고려한 시설 폐지
라-2	마-1	야외공연장	· 도면표시번호 변경 - 라-2 → 마-1	· 운동시설 신설 및 문화홍보관 폐지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6) 편익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 편익시설 총괄표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계	191.19	163.13	-	-
화장실	44.69	34.95	-	-
휴게음식점	127.15	110.47	-	-
관리사무소	19.35	17.71	-	-

■ 편익시설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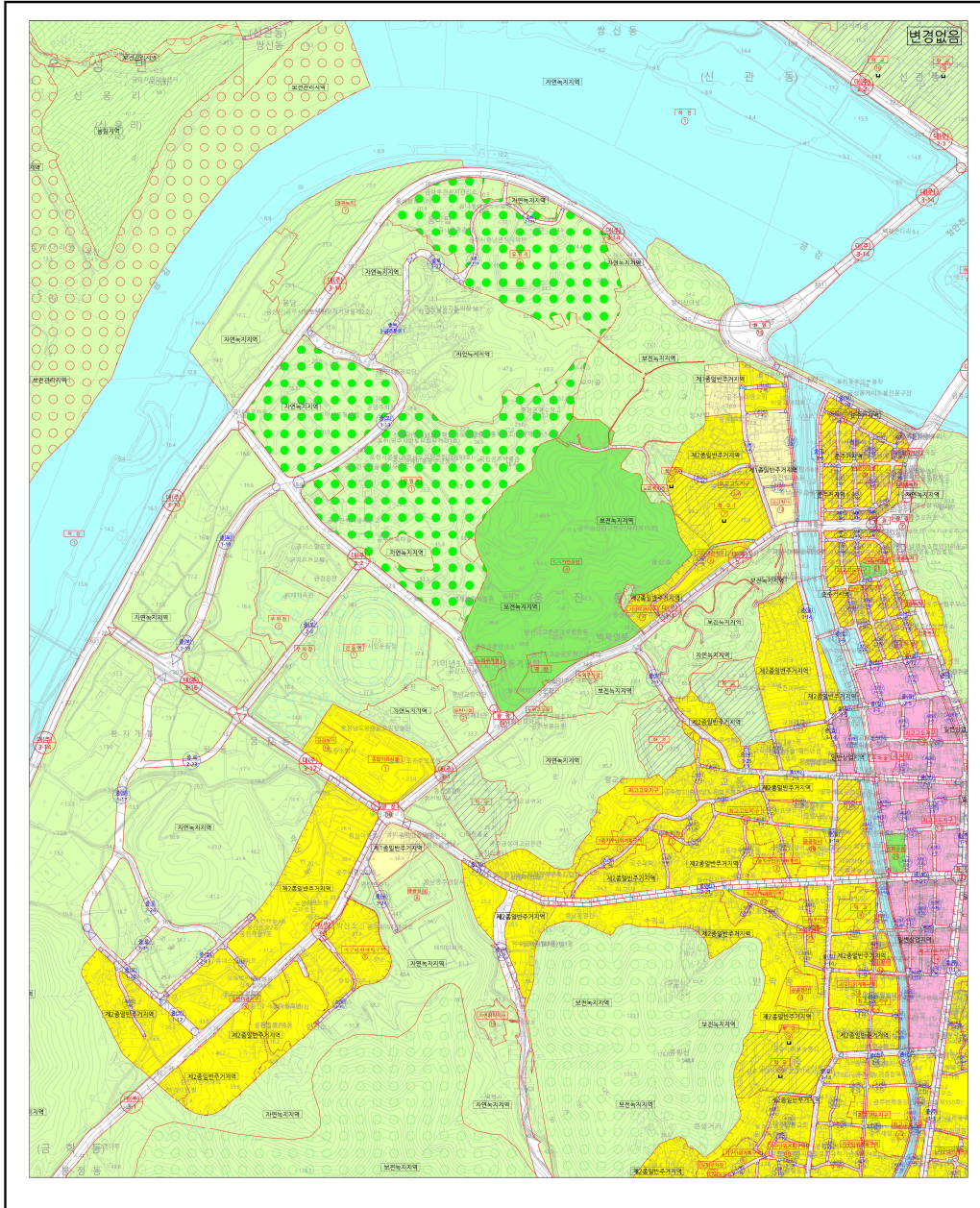
구분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44.69	증)146.50	191.19	36.05	163.13	-
변경	마-1	바-1	화장실	44.69	-	44.69	36.05	34.95	-
신설	-	바-2	휴게음식점	-	증)127.15	127.15	-	110.47	-
신설	-	바-3	관리사무소	-	증)19.35	19.35	-	17.71	-

■ 편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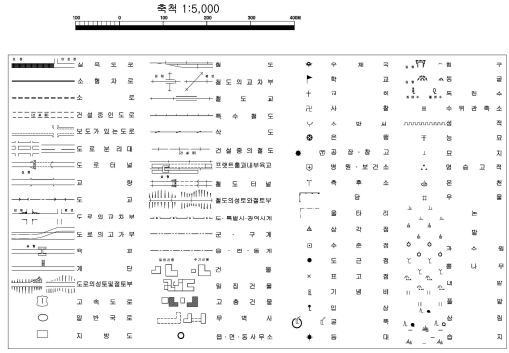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마-1	바-1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표시번호 및 건축연면적 변경 - 도면표시번호 : 마-1 → 바-1 - 건축연면적 : 36.05㎡ → 3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시설 신설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및 건축물대장상 건축연면적으로 정정
-	바-2	휴게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면적 : 12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이용현황 및 추후 밤마실 야시장 운영 시 공유주방 활용계획 등을 고려한 변경
-	바-3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면적 : 1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소 신설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공주시 관리계획 결정(변경)도(공주015)



범	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산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선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대로이상)	도로(중로이하)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인		
공	공	공
공	공	공
003	004	005
014	015	016
024	025	026

1. 부속은 확인 대우하지 않습니다.
2. 붙임의 기준은 당해안의 용역기간
3. 용역기간은 2024.05.01 ~ 2024.05.31

붙임 3.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변경



붙임 4. 도시관리계획(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지도

■ 기정



■ 변경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4. 1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62-19 (상왕동) 외 9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0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4. 10.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주시 수도정비계획(변경) 고시

1. 공주시 전역의 수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수도정비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법 제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공주시 수도정비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시 상하수도과(041-840-7930)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1. 수도정비계획의 변경목적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수도시설의 적기확장, 급배수시설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사항

① 계획의 범위

- 계획기간 : 2020년 ~ 2040년(기준년도 2019년)

② 시설확충 계획

- (배수시설) 배수지 4개소* 신설, 배수지 2개소** 증설
 - * 의당 300^m, 정안 2,000^m, 이인 900^m, 남공주 2,000^m
 - ** 옥룡 8,485 → 11,800^m, 유구 1,134 → 2,000^m

- (송·배수관로) D50~400 514.6km(송수 22.3, 배수 492.3) 신설
- (가압시설) 가압장 66개소(송수 7, 배수 59) 신설 및 1개소(송수 1) 증설, 감압밸브 5개소 신설

③ 시설개량 계획

- (취수시설) 유구(취) 개량(취수펌프 및 수변전설비 등 교체)
- (정수시설) 옥룡·유구(정) 개량(활성탄 교체, 플록형성지, 약품주입설비, 여과지 개량 등)
- (송·배수시설) 노후관로 정비 80.9km(송수 1.4, 배수 57.7, 급수 21.8)
- (블록시스템 구축) 대블록 4개소, 소블록 24개소 구축
- (소규모 수도시설) 총 176개소 중 176개소 지방상수도 전환
- (시설폐지) 유구 취·정수장 폐지
 - ※ 전차 수도정비계획 기승인('10.12월) 및 폐쇄 예정('30년~)

④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 상수원, 취·정수, 송·배수시설(관세척 499.83km) 수질관리방안, 먹는물 수질 모니터링 계획 등

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기술진단(정수장, 관망) 1회/5년 등

⑥ 정보화계획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21.6 준공), 유지관리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검토 등

⑦ 온실가스 저감계획

- 고효율 기계설비(펌프·밸브) 교체에 따른 탄소배출량(0.77톤) 저감계획 등

⑧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 절수설비(920^{m³}/일), 빗물이용시설(0.3^{m³}/일), 물 절약 교육·홍보 등

(단위 : ^{m³}/일)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920.3	920.3	920.3	920.3
중수도 절감량	-	-	-	-
절수기기	920	920	920	920
빗물재이용	0.3	0.3	0.3	0.3
하·폐수 재이용	-	-	-	-

⑨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 (공급시설의 안정화) 송수관로 복선화 D150~250mm, L=23.2km

10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	183,584	37,405	89,664	42,352	14,163
시설확충	102,507	21,127	58,047	12,611	10,722
시설개량	51,497	13,828	11,026	26,613	30
수질관리	-	1,096	281	1,186	240
유지관리	7,742	880	2,697	1,468	2,697
정보화	-	-	-	-	-
온실가스 저감	-	-	-	-	-
수요관리	1,896	474	474	474	474
안정화	17,139	-	17,139	-	-

11 총괄표

구 분	당초 계획('19.7 승인, 부분변경)				금회 계획						
	2010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19년 (기준년도)	2025년 (1단계)	2030년 (2단계)	2035년 (3단계)	2040년 (4단계)		
인구	계획인구(인)	126,130	113,057	118,540	113,540	108,629	105,610	103,766	103,814	103,911	
	급수보급율(%)	66.7	77.5	87.4	90.4	85.8	91.6	98.1	99.4	100.0	
	급수인구(인)	84,570	87,601	105,740	104,290	93,156	96,787	101,802	103,160	103,911	
사용량 원단위 (Lpcd)	읍	230	240	240	250						
	면	160	160	160	160	257	256	259	259	259	
	동	280	290	290	290						
목표유수율(%)	75.0	80.0	83.0	85.0	73.1	85.0	85.5	86.0	86.5		
급수량 원단위 (Lpcd)	일평균	읍	300	300	280	290					
		면	210	200	190	180	352	301	303	301	299
		동	370	360	340	340					
	첨두부하율	1.31	1.31	1.31	1.31	1.15	1.30	1.30	1.30	1.30	
	일최대	읍	393	393	367	380					
		면	275	262	249	236	404	391	394	391	389
동	485	472	445	445							
일최대 수요량 (m³/일)	총 계	37,910	53,778	60,188	62,015	41,462	44,134	51,472	52,504	52,591	
	지방 소계	18,039	18,737	20,820	21,849	12,356	18,212	21,667	22,699	22,786	
	생활 정수	17,689	12,157	14,240	14,569	12,031	15,991	16,831	17,246	17,333	
	공업 정수	350	3,930	3,930	3,930	325	2,221	4,836	5,453	5,453	
	기타 정수	-	2,650	2,650	3,350	-	-	-	-	-	
	광역 소계	19,871	35,041	39,368	40,166	29,106	25,922	29,805	29,805	29,805	
	생활 정수	19,761	26,961	26,150	24,601	25,603	21,853	23,278	23,088	23,088	
	공업 정수	-	7,740	11,748	14,095	3,503	3,890	5,629	5,819	5,819	
	기타 정수	110	340	1,470	1,470	-	179	898	898	898	
물수요관리(m³/일)	-	-	-	-	-	921	921	921	921		

용수 공급계획 (m ³ /일)	총 계	60,500	67,500	65,000	65,000	60,500	60,100	55,600	55,600	55,600
	지방 소계	30,500	30,500	28,000	28,000	30,500	29,100	26,600	26,600	26,600
	옥룡 ¹⁾ 정수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6,600	26,600	26,600	26,600
	유구 ²⁾ 정수	2,500	2,500	-	-	2,500	2,500	-	-	-
	광역 소계	30,000	37,000	37,000	37,000	30,000	31,000	29,000	29,000	29,000
	공주 정수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7,500	27,500	27,500	27,500
	석성 ³⁾ 정수	-	7,000	7,000	7,000	-	3,500	1,500	1,500	1,500
과부족 (m ³ /일)	총 계	22,590	13,722	4,812	2,985	19,038	16,887	5,049	4,017	3,930
	지방 소계	12,461	11,763	7,180	6,151	18,144	10,888	4,933	3,901	3,814
	정수	12,461	11,763	7,180	6,151	18,144	10,888	4,933	3,901	3,814
	광역 소계	10,129	1,959	-2,368	-3,166	894	5,999	116	116	116
	정수	10,129	1,959	-2,368	-3,166	894	5,999	116	116	116

- 1) 옥룡(정) : 시설용량 28,000m³/일이나, 국가수도기본계획 광역 원수 공급계획량 26,600m³/일 기준 반영
- 2) 유구(정) : 지방상수도 유구정수장 폐쇄계획은 전차 수도정비계획 기승인('10.12월) 및 폐쇄 예정('30년~)
- 3) 석성(정) : 탄천일반산단 공업용수 계약현황('11.10월~, 계약량: 1,500m³/일) 및 탄천·이인면 급수체계 조정 계획(탄천 일반산단 외 생활용수: 광역 석성(정)→지방 옥룡(정) 전환(2단계))을 고려하여 단계적 공급계획량 조정 반영('25년 3,500m³/일, '30년~ 1,500m³/일)